

1. 개정이유

신규업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식당업의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
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(2020. 6. 11. 비상경제
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‘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
창출 기반 강화방안’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).

2. 주요내용

가.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 기간 제한 완화(안 별표2 제4호)

-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
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조리경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
로 완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별표 2 제4호 가목 2) 나) 중 “3년(다만,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년으로
한다)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 2] 4. 관광식당업 가. 인적요건 2)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) 생략 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 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 경력이 <u>3년(다만,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한 다)</u> 이상인 자	[별표 2] 4. 관광식당업 가. 인적요건 2) ----- ----- ----- ----- 가) 현행과 같음 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년</u>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	
연락처	(044) 203 - 2883